제49기 통일경영공시

(2020년1월1일 ~ 2020년12월31일)

본 자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경영공시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저희 저축은행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저축은행

【일반현황】

1. 선 언 문

본 자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저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임 용 훈

2. 경영방침

(1) 경 영 이 념

공신력증대를 통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축분위기와 저축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금융기관이 되도록 한다.

(2) 경 영 목 표

서민대중의 저축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전 안전경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자금수요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체제를 갖춤으로써 지역금융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3) 경영기본자세

1. 친절한 자세
2. 지식경영의 자세
3. 절약하는 자세
4. 근면한 자세
5. 봉사하는 자세

3. 연혁·추이

⦿ 1972년 10월 회사 설립
⦿ 1979년 10월 재무부장관 표장 수상(저축의날)
⦿ 1981년 09월 대통령 새마을훈장 노력상 수상
⦿ 1982년 02월 광주시 북구 누문동 사옥으로 이전
⦿ 1983년 10월 경영권 이전(대표이사 이관진)
⦿ 1984년 02월 재무부장관 표장 (조세의날)
⦿ 1988년 03월 사옥증축 (사무실 확장)
⦿ 1998년 11월 대표이사 이장훙 취임
⦿ 2002년 03월 대한상호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
⦿ 2003년 11월 상무지점 개점
⦿ 2010년 09월 대한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
⦿ 2014년 03월 상무지점 폐쇄
⦿ 2019년 08월 대주주 (주)대광건영, (주)대광에이엠씨로 경영권이전 (대표이사 이평화)
⦿ 2020년 01월 현대표이사 임용훈 취임

4. 조직

(1) 조직도

(2020.12.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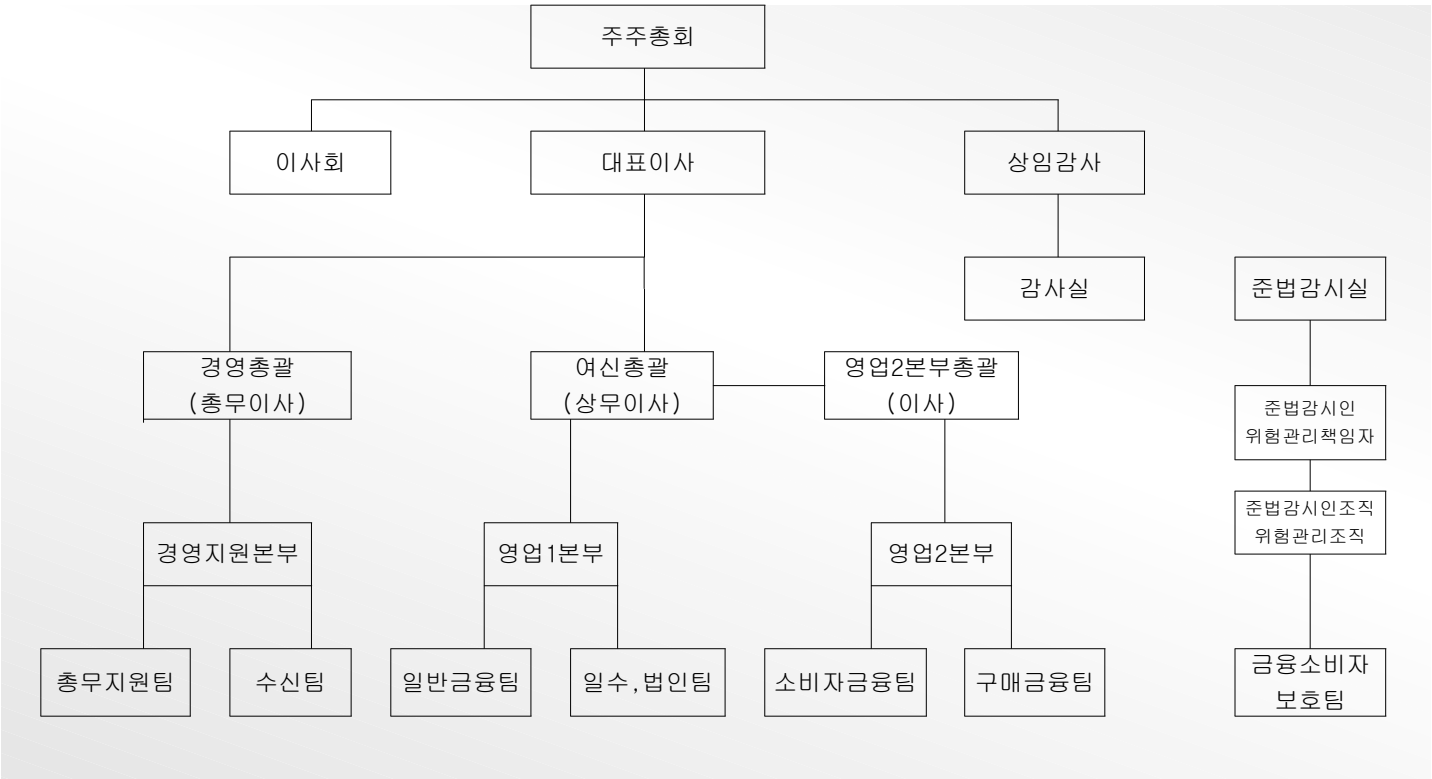

(2)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제49기 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영 업 점			자동화기기		
본 점	출장소	계	C D	ATM	기 타
1	-	1	-	-	-

5. 임직원수

* 직전분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분기):2020년12월말
제49기3분기말(직전분기):2020년09월말
(단위 : 명)

구 분		제49기4분기말 (금분기)	제49기3분기말 (직전분기)
임 원	상 근	5	5
	비상근·사외이사	-	-
일반직원	책 임 자	15	15
	직 원	23	20
기 타		-	-
계		43	40

6. 임원현황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구 분	성 명	직 명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
상임임원	임 용 훈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김 창 덕	감 사	상근 감사
	이 승 희	상무이사	영업 총괄
	이 석 범	이 사	총무지원업무 총괄
	노 기 환	이 사	소비자금융업무 총괄
비상임임원	-	-	-

7. 동일계열회사

제49기말(금기)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주, %)

회사 유형	법인명	업종	주소	임원현황		주주현황		관련법규
				직위	성명	성명	지분율	
비상장	(주)대광에이엠씨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8823동 101호	대표이사	김남석	조영훈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디케이원	주택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57-3(마륵동)	대표이사	류희석	디케이랜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대광건설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대표이사	안원선	기획재정부	38.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6호
	㈜대광건영(주)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대표이사	조영훈	조영훈	78.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대광이엔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	대표이사	조영훈	(주)대광건설	61.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덕원이앤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대표이사	김경만	조영훈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디케이개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대표이사	조택석	조영훈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디케이랜드	기타 공동주	광주광역시 서	대표이사	정태원	조영훈	30.0	상호저축은행법

		택 건설업	구 경열로 124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디케이물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대표이사	조영훈	조영훈	4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디케이에셋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대표이사	김혁	최윤정	6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디케이플러스	기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	대표이사	조찬호	(주)대광에이엠씨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로제비앙건설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대표이사	김인욱	조영훈	51.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포레지아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11층(서동)	대표이사	김명준	(주)대광에이엠씨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대광로제비앙㈜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대표이사	유종국	조영훈	51.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더원인베스트먼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판교로 55	대표이사	송덕래	최윤정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디케이월드	기타공동주택건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57-3(마륵동)	대표이사	송덕래	디케이랜드	1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에벌루션㈜	예식장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55	대표이사	박병일	(주)대광에이엠씨	47.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제이에이치관광개발㈜	호텔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55	대표이사	박병일	(주)대광에이엠씨	47.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

주1) "회사유형"에는 회사의 종류별로 주식회사는 '상장', '비상장'으로 분류하고, 기타회사의 경우 '유한', '합자회사'등으로 기재

2) "임원"은 등기부상 등기된 임원을 기록

3) "주주현황"은 지분율 상위 5대주주를 기재

4) "관련법규"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해당법규를 기재(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제2항 참조)

8. 자본금

(단위 : 억원)

년월일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수	증·감자 금 액	증·감자 내 용	증·감자후 자본금	비 고
		해당사항없음				

주) 최근 3개년간의 자본금 증·감자내용 및 증·감자 후 자본금 금액임

9. 주요 주주현황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 주 명	소 유 주 식 수	소 유 비 율(%)
(주)대광건영	874,349	52.2
대한상호저축은행	428,772	25.6
(주)대광에이엠씨	372,939	22.2
합 계	1,676,060	100.00

10. 배당

구 분	2020회계년도	2019회계년도
보 통 주 배 당 율	-	-
보 통 주 주 당 배 당 액	-	-
주 당 당 기 순 이 익	-	-
배 당 성 향	-	-

[경영실적]

11. 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2020회계년도	2019회계년도
업 무 이 익(충당금적립전 이익) (A)		92	67
충 당 금 적 립 액 (B)		24	16
	대 손 충 당 금	24	16
	지 급 보 증 충 당 금	-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기 타 충 당 금	-	-
법 인 세 비 용 (C)		15	9
당 기 순 이 익 (A-B-C)		53	42

12. 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

(1)이자율 현황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			
			평균잔액		이 자 금 액	이자율	평균잔액		이 자 금 액	이자율
				구성비				구성비		
조달	원가성	예 수 금	2,179	87.65	57	2.62	1,623	86.70	47	2.89
		표지어음예수금	-	-	-	-	-	-	-	-
		차 입 금	-	-	-	-	-	-	-	-
		콜 머 니	-	-	-	-	-	-	-	-
		기 타	34	1.37	-	-	21	1.12	-	-
		소 계	2,213	89.02	57	2.58	1,644	87.82	47	2.86
	무원가성	자 본 총 계	266	10.70	-	-	224	11.97	-	-
		충 당 금	-	-	-	-	-	-	-	-
		기 타	7	0.28	-	-	4	0.21	-	-
		소 계	273	10.98	-	-	228	12.18	-	-
조 달 합 계			2,486	100	57	2.29	1,872	100	47	2.51
운용	수익성	예 치 금	427	16.75	6	1.41	448	23.31	9	2.01
		유 가 증 권	71	2.79	6	8.45	22	1.15	1	4.54
		대 출 금	2,008	78.77	182	9.06	1,425	74.14	145	10.18
		콜 론	-	-	-	-	-	-	-	-
		기 타	27	1.06	-	-	15	0.78	-	-
		대손충당금등(△)	△75	△2.94	-	-	△74	△3.85	-	-
		소 계	2,458	96.43	194	7.89	1,836	95.53	155	8.44
	무수익성	현 금	1	0.04	-	-	1	0.05	-	-
		유 형 자 산	75	2.94	-	-	74	3.85	-	-
		기 타	15	0.59	-	-	11	0.57	-	-
		소 계	91	3.57	-	-	86	4.47	-	-
운 용 합 계			2,549	100	194	7.61	1,922	100	155	8.06

(2) 만기구조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정상·요주의 분류자산 및 부채의 만기					고정이하 분류자산(C)	합계 (A+B+C)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A)	3년 초과(B)		
운 용	751	1,080	1,836	2,616	210	105	2,930
대출금(1)	328	657	1,413	2,118	150	105	2,373
조 달	892	1,305	2,394	2,609	321	-	2,930
예수금(2)	892	1,305	2,321	2,536	2	-	2,538
차이(1-2)	△564	△648	△908	△418	148	105	△165

(3) 후순위채 발행현황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채권의 종류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발행금리	신용등급	비고
		해당사항없음				

13. 부문별 수지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도(A)	2019년도(B)	증감 (A-B)
이자부문	이 자 수 익		189	155	34
		예치금이자	6	9	△3
		유가증권이자	2	-	2
		대출채권 이자	181	145	36
		기타이자수익	-	-	-
	이 자 비 용		47	39	8
		예수금이자	47	39	8
		차입금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	-	-
	소 계		142	116	26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4	2	2
		수수료비용	15	16	△1
		소 계	△11	△14	△3
기타영업 부문		기타영업수익	12	23	△11
		기타영업비용	35	24	△11
		소 계	△23	△1	22
부문별이익 합계			108	101	7
판매비와 관리비(△)			42	52	△10
영업이익			66	49	17
영업외 수익			2	2	-
영업외 비용(△)			-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68	51	17
법인세 비용(△)			15	9	6
당기순이익			53	42	11

14. 자본적정성지표

(1) 자본적정성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 (금기)	제48기4분기말 (전년동기)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법규정상 요구되는 비율은 (5%)이상임	14.01	15.69
BIS기준기본자본비율	12.72	14.40
단순자기자본비율	10.89	12.15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 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금융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 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내역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p)

구 분		제49기4분기말 (금기)	제48기4분기말 (전년동기)
기본자본계(A)		318	263
	자본금	84	84
	자본잉여금	-	-
	이익잉여금	241	188
	연결회사의 외부주주지분	-	-
	공제항목	△7	△9
보완자본계(B)		32	24
	상위 기한부 후순위 채무	-	-
	하위 기한부 후순위 채무	-	-
	재평가적립금	-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	-	-
	대손충당금	32	24
경영정상화 장기차입금(C)		-	-
공제항목계(D)		-	-
자기자본계(A+B+C-D)		350	287
위험가중자산		2,502	1,829

15. 자산건전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금기)	제48기4분기(전년동기)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12.06	14.76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2.69	2.05
고정이하 여신비율	4.43	4.57
연체대출비율	1.71	2.69

16. 수익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금기)	제48기4분기(전년동기)
총자산순이익률	2.09	2.18
총자산경비율	1.66	2.69
수지비율	67.20	72.17

17. 유동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금기)	제48기4분기(전년동기)
유동성 비율	114.75	137.03
예대율	90.63	

◈ 유동성비율 : 단기조달자금에 대한 단기자금운용을 표시(상호저축은행의 지급능력)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 생산성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금기)	제48기4분기(전년동기)
직원1인당	충당금적립전이익	2.19	1.60
	예 수 금	51.88	45.08
	대 출 금	47.81	39.58
1영업점당	예 수 금	2,179	1,623
	대 출 금	2,008	1,425

19. 기타 지표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말(금기)	제48기말(전기)
퇴직급여 충당금비율	100%	100%

[재무상황]

20. 개 요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 (금분기)		제48기4분기말 (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자산	현금 및 예치금	497	16.96	414	18.95
	유 가 증 권	44	1.50	31	1.42
	대 출 채 권	2,288	78.09	1,633	74.74
	콜 론	-	-	-	-
	유 형 자 산	74	2.53	75	3.43
	기 타 자 산	27	0.92	32	1.46
자 산 총 계		2,930	100	2,185	100
부채	예 수 금	2,538	86.62	1,860	85.13
	차 입 금	-	-	-	-
	콜머니	-	-	-	-
	기 타 부 채	73	2.49	59	2.70
	부 채 총 계	2,611	89.11	1,919	87.83
자	자 본 금	84	2.87	84	3.84

본	자본잉여금	-	-	-	-
	자 본 조 정	△7	△0.24	△7	△0.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0.03	1	0.05
	이익잉여금	241	8.23	188	8.60
	자 본 총 계	319	10.89	266	12.17
부채 및 자본총계		2,930	100	2,185	100

21. 대출금 운용

(1) 용도별 대출금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기 업 자 금 대 출	1,736	73.15	1,176	68.65
가 계 자 금 대 출	565	23.81	481	28.08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72	3.03	56	3.27
합 계	2,373	99.99	1,713	100

(2) 담보별 대출금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담보	부 동 산	1,415	59.63	942	54.99
	동 산	-	-	-	-
	유가증권	-	-	-	-
	예 수 금	14	0.60	8	0.46
	기 타	501	21.11	372	21.71
	소 계	1,930	81.34	1,322	77.17
보 증		2	0.08	5	0.29
신 용		441	18.58	386	22.53
합 계		2,373	100	1,713	100

(3) 중소기업 대출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 (금기)	제48기4분기말 (전년동기)
중소기업대출	비율 (A/B x 100)	52.04	40.28
	중소기업대출(A)	1,235	690
	총 대 출 (B)	2,373	1,713

(4) 부동산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준수 및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제49기4분기말 : 202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업종명	한도 준수 현황		건전성 분류 현황							
			대출채권						연체액	연체율
	한도 금액	신용 공여액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합계		
부동산PF대출(①)	475	85	81	-	2	-	2	85	4	4.71
건설업(②)	712	249	245	1	-	-	-	249	-	0.00
부동산업(③)	712	565	496	45	24	-	1	565	5	0.88
합계(①+②+③)	1,187	899	822	46	26	0	3	899	9	1.00

(5)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2020년 12월말 (금기)	2020년 09월말	2020년 06월말	2020년 03월말
총 대 출	2,373	2,145	2,045	1,817
소액신용대출	11	12	12	12
비중	0.46	0.54	0.58	0.66
소액신용대출연체액	1	1	1	2
비중**	0.04	0.05	0.05	0.11

주 1) 총여신중 3백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금액을 분기별로 기재

2) 연체기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의 연체여신 정의 적용

* 소액신용대출잔액이 10억원이하인 저축은행은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액신용대출연체액 비중은 소액신용대출연체액을 총대출로 나눈 값

22. 유가증권투자 및 운용현황

제49기말(금기) : 2020년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취득원가	기말장부가액	평가손익잔액(B/S)	운용손익(I/S)
당기손익인식증권	10	10	-	-
매도가능증권	33	34	△1	2
만기보유증권	-	-	-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합 계	43	44	△1	3

23. 예수금 현황

(1) 형태별 예수금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			
	잔 액		평균잔액		잔 액		평균잔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요구불예금	184	7.25	64	2.94	40	2.15	50	3.08
거치식예금	2,242	88.34	2,025	92.93	1,733	93.17	1,469	90.51
적립식예금	112	4.41	90	4.13	87	4.68	104	6.41
표지어음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	2,538	100	2,179	100	1,860	100	1,623	100

(2) 예금자별 예수금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 분기말(금기)		제48기4 분기말(전년동기)	
		구성비		구성비
개 인	2,289	90.19	1,484	93.51
법인 및 단체	249	9.81	103	6.49
기 타	-	-	-	-
합 계	2,538	100	1,587	100

주) 잔액기준

24.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1) 대손상각액

* 전년동기대비

제49(금)기 4분기(3개월) : 2020년10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제49(금)기 누계 : 2020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제48(전)기 4분기(3개월) : 2019년10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제48(전)기 누계 :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단위 : 억원)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기)	
		금분기	누계	전년동기	누계
기중대손상각액		-	24	6	24
	일 반	-	24	6	24
	특 별	-	-	-	-

(2) 대손충당금내역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 4분기말(전년동기)
대 손 충 당 금		88	82
	일 반	88	82
	특 별	-	-

25. 부실 및 고정이하 분류여신 현황

(1) 부실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
총 여 신	2,373	1,713
부 실 여 신	34	41
고정 이하 분류 여신	105	78
순고정이하 분류여신	62	33

주1) 부실여신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임
2) 고정이하분류여신은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임
3) 순고정이하분류여신은 고정이하분류여신에서 고정이하 충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

◈ 부실여신 :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고정이하분류여신 :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중 고정,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2) 거액 부실여신 증가업체 현황

* 직전분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9기3분기말(전분기):2020년09월말
(단위 : 억원)

업체명[1]	제49기4분기말 (금분기)	제49기3분기말 (직전분기)	증가액	증가사유	비 고
	해당사항없음				

주1) 업체명은 직전분기대비 부실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 증가업체를 대상으로 상위 20개 업체를 기재하되,
법인의 경우 "(주)***(업종)", 개인명의대출의 경우 업체명에 "개인대출(홍*동)"으로 기재

(3) 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업 체 명	채권재조정 결정일자	제49기4분기말 총여신잔액	부실여신잔액	채권재조정 진행내역	비 고
	해당사항없음				

주) 총여신잔액이 10억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함

26. 주석거래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
지급보증	-	-
대손상각채권	120	126
배서어음	-	-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
파생금융상품 거래	-	-

27.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년내 취득분	1~3년내 취득분	3년 이전 취득분
비업무용 토지	-	-	-
비업무용 건물	-	-	-
합 계	-	-	-

27-1. 겸영업무 취급현황

* 전년동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기):2020년12월말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2019년12월말
(단위 : 억원, 건, 매)

구 분	제49기4분기말(금기)		제48기4분기말(전년동기)	
	실 적	건(매)수	실 적	건(매)수
할부금융	-	-	-	-
체크카드	1	2,495	1	3,088

[리스크관리]

28. 개 요

(1) 리스크 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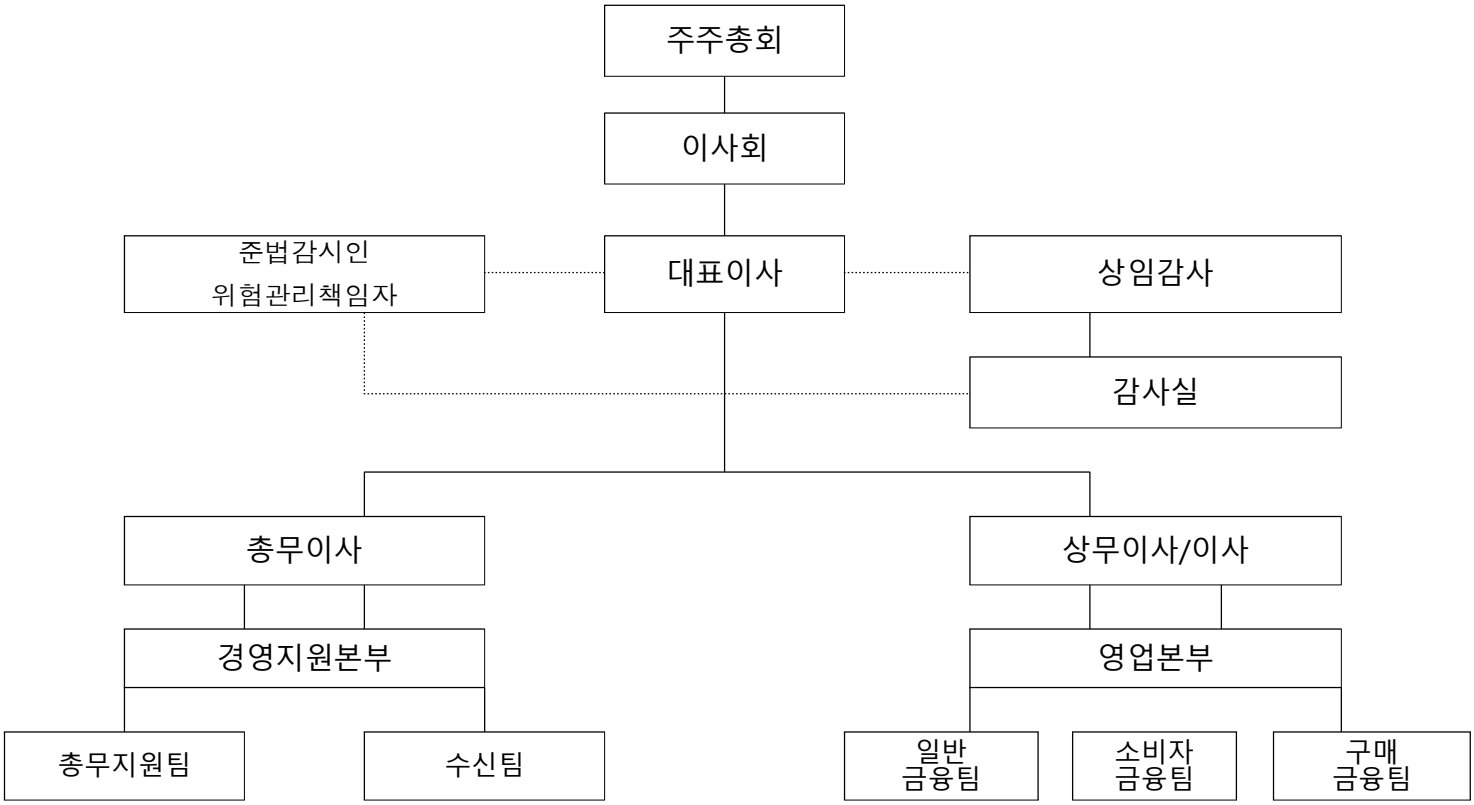

(2) 리스크 관리체계

○목 적 - 우리 저축은행의 위험관리 전략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신용, 시장, 유동성, 금리” 위험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이사회로부터 실무부분까지 Top-down으로 부여된 책임과 역할이 통일된 체제수행에 있으며 위험 관리조직의 체계화, 선진위험 관리 관리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위험 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자산과 목표이익을 적정분배함으로써 경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관리 원칙 - 우리 저축은행은 각종 위험관리를 전반적인 영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위험관리를 한다.

(3) 신용리스크 관리

[용어정리]

1. “신용위험” 이라함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융자 및 채권매입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거나 미래의 일정시점에 기 확정된 가격으로 교환이 약정된 계약(예 : 선물환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손실을 말 한다.
2. “신용등급” 이라함은 당사가 신용을 공여하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그 상태에 따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신용평가” 라함은 재무자료, 영업활동, 경영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함을 말한다.

기 본 원 칙	내 용
전사적 위험관리체제 구축	효율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전사적 책임은 최고경영층에서부터 일선영업부서까지 체계적으로 구축
영업부서의 활동과 위험관리 조직의 통제	영업부서의 영업활동 자율성은 최대한 부여하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영업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은 위험관리조직에서 집중관리
명확한 책임과 한계	담당자별, 취급상품별, 거래별 등 필요한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의 실행관계자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그에 따른 한도내에서 책임을 부담
위험자산의 분산화	특정자산, 특정지역, 특정업종, 특정거래처 등에게 자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 및 업무의 분산화 도모
위험관리의 내부모형 구축	회계처리방법 또는 사내·외 모든 거래에 대한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구축하고 위험을 고려한 수익과 자기자본 배분

4. “신용심사” 라함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종합판단하고 신용한도, 거래조건, 심사유효기간 등을 결정함을 말한다.
5.“총한도” 라함은 일정기간 이내에 공여할 수 있는 대출, 채권매입, 보증 등의 합계액의 한도를 말한다
6. “심사유효기간” 이라함은 신용등급, 한도, 거래조건에 관하여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말한다.
7.“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이라 함은 미래의 특정시점을 만기로 하여 체결된 외환과 채권같은 자산의 교환계약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하여 무효화되었을 경우 당사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말한다. 이 손실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만기가 갈수록 커진다.

[관리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신용위험의 관리를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① 거래상대별 적용대상 개인고객
   법인고객
   제휴점
   ② 운용주체별 적용대상 단기자금운용(MMF 등 만기 3개월 이내)
   기자금운용(예적금 등 만기3개월 초과) 주식, 채권

[관리주체]

1. 거래상대별 신용위험의 관리주체는 영업팀이며 영업팀내 전담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업팀은 일정기간마다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산하 지점에 전달하고 지점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신용등급 판정]

1. 거래상대별 신용등급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주체(영업팀)는 해당 거래상대에 대하여 당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 및 외부 전문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
의 건전성을 분류한다.
② 해당 거래상대의 신용등급은 필요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향후 신용등급의 변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표시한다.
③ 관리주체(영업팀)는 해당 거래상대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운용주체별 신용등급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주체(지원팀)는 당사 신용등급 및 외부전문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운용주체(취급 금융기관 포함)별 투자적격여부, 최대운용한도, 운용기간, 포트폴리오의 구성기준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련임원 및 위험관리실무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①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 대하여 관련임원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지원팀)는 해당 운용주체(취급 금융기관 포함)의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결과를 문서로 수령한다.
④ 제③호의 평가결과 급격한 신용등급의 변화 등 돌발사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여 손실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3. 당사 자체적인 신용등급과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자산운용]

1. 자산운용시 투자적격은 외부 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CP등급 A3- 이상으로 한다.
2. 외부 신용등급 BB+그룹 공통기준상의 "관찰대상")이하 또는 CP등급 B+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로 운용한도 등을 별도록 설정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2항에서 설정된 한도이내에서의 운용은 해당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되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문서화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4. ① 법인대출과 관련하여 타 법인이 보증인으로 입보되는 건은 대출을 받는 법인과 보증인의 신용등급을 모두 파악한다.
② 양자의 신용등급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보증인측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쪽의 신용 등급을 적용한다.
5. 자산 운용 시 신용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룹 내 공통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요구 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	당기 충당금 설정기준		
	PF대출채권	기 타	이자율20%이상 대출채권 개정최저적립율
정 상	2%이상(*)	기업 0.85% 개인 1.00%	기업 1.28% 개인 1.50%
요 주 의	10%이상 (아파트인 경우 7%이상)	기업 7.0% 개인 10.0%	기업 10.5% 개인 15.0%
고 정	30%이상	20%이상	30%
회수의문	75%이상	기업 50% 개인 55%	기업 75% 개인 82.5%
추정손실	100%	100%	100%

(*) 신용등급 BBB-, A3 이상인 기업이 지급보증한 대출은 0.5% 이상, 취급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출은 3% 이상

주 1)PF의 정상자산은 최초 취급 후 1년 미만의 대손충당금 설정요구 비율을 적용한다.
2)PF의 요주의 자산은 PF대출 중 프로젝트가 아파트인 PF대출의 대손충당금 설정요구 비율 이다.

[보고]

1. 규정 제15조 각 항에서 명시한 신용위험 관리주체는 신용위험 관리내역 및 그 결과를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매월 개최되는 위험관리위원회 정기 회의시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보고를 위한 자료는 그룹 보고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자료는 매월 본사의 위험관리전담부서로 전송해야 한다.
3. 신용위험 관리주체는 보고자료 작성 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당월내역 및 전월대비 변동 내역을 작성한다.
①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별 신규취득액 및 변동상황
② 요주의 및 관찰대상자산의 신규취득액 및 변동상황
③ 투자부적격 자산의 취득내역
④ 부실자산 현황 및 예상부실액
⑤ 기타 신용등급의 급격한 변화 등이 예상되는 자산내역 등

(4) 시장리스크 관리

[용어 정의]

1. “시장위험”이라 함은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동에 의한 채권가격 변동 및 주가, 환율 등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손실을 말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순이자이익 변동 및 순자산가치 변동은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2. “운용한도”라 함은 운용부서 및 운용담당자에게 주어진 투자한도를 말하며 현물주식이나 채권투자에서는 투자금액을, 파생상품이나 선물환거래에서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손실한도”라 함은 시장위험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장성 자산에 허용된 최대한의 손실허용 수준을 말한다.
4. “손절매”라 함은 상기 손실한도를 지키기 위해 손실한도를 초과한 거래나 종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략투자”라 함은 투자의사결정이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한다.

[관리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시장위험 관리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규정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이익 확보 및 당사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시장위험의 관리 적용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신상품이라함은 규정 제2조 3항에서 정의된 신상품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신상품

[관리주체]

시장위험의 관리는 지원팀이 담당한다.

[운용 및 손실한도]

1. 운용 및 손실한도는 매입가격의 20% 이내에서 규정 제25조의 관리주체가 상품별로별도 설정하여 문서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단, 전략투자는 운용 및 손실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운용 및 손실한도상에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화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주식]

1. 보유주식의 평가는 시가 또는 장부가로 평가하고 시가평가는 매일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시가평가 대상은 상장주식과 KOSDAQ주식으로 한다.
3. 장부가 평가대상은 비상장주식으로 한다.
4. 손실한도의 산출은 매입가 대비 시가의 하락율로 하며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주식은 당일 중 반대매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상기 4항의 반대매매 대상주식중 불가피한 사유로 반대매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세내역과 사유를 문서(반대매매 유보 신청서)로 작성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6. 승인이 된 건은 1회에 한하여 반대매매를 유보할 수 있다.

[채권]

1. 보유채권의 평가는 시가 또는 장부가로 하며 시가평가의 경우에는 매일단위로 채권시장의 평가결과를 수신한다. 시가 평가의 대상 : 국채, 공채(특수채 포함), 회사채(금융채 포함), 전환사채, 개발신탁수익증권
2. 시가평가는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대표가격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방식은 관리주체인 지원팀에서 설정한다.
3. 평가손익은 보유채권의 종목별 장부가와 2항의 시가와의 차이로 한다.
4.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건은 보유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상기 4항의 반대매매 대상채권 중 불가피한 사유로 반대매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와 추가 보유기간을

문서(반대매매 유보 신청서)로 작성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6. 승인이 된 건은 1회에 한하여 반대매매를 유보할 수 있다.

[파생상품]

1.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따라 헷지거래, 자산배분거래, 재정거래, 투자거래로 구분한다.
① 헷지거래는 기 보유 또는 장래에 보유할 주식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지수선물 또는 옵션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자산배분거래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현물주식의 매도가 불가피한 경우 지수선물 또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재정거래는 현물선물간, 선물옵션간 또는 현물간의 가격불균형을 이용하여 최소위험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투자거래는 파생상품 가격의 등락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말한다.
2. 손실한도를 초과하는 건은 당일 중 반대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상품 및 기타]

1. 신상품에 대한 투자는 아래의 항목을 검토하고 진행시켜야 한다.
① 거래상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 신용, 금리, 사무 등의 위험을 파악
② 측정가능한 위험의 계량화
③ 위험대비 수익의 적절성 평가
④ 운용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
⑤ 회계처리 방법
⑥ 기타 법률 및 감독규정 관련사항 등
2. 상기 2항의 제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는 문서화하여 담당임원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신상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

(5) 유동성리스크 관리

<정기예금 등의 잔존기간별 잔액>

ㅇ 정기예금

(단위 : 억원)

구 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합 계
정기예금	2,049	193	-	-	2,242

ㅇ 대출금

(단위 : 억원)

구 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합 계
대출금	1,277	246	458	115	277	-	2,373

주)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정하고 특정기간(1개월 등) 안에 회전 취급하는 대출금은 한도약정기간에 불구하고 1년 이내로 분류함.

ㅇ 유가증권

(단위 : 억원)

구 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합 계
국·공채	-	-	-	-	-	-	-
사 채	-	-	11	10	10	-	31
기 타	13	-	-	-	-	-	13
합 계	13	-	11	10	10	-	44

주 1) 국·공채란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재정증권국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발행채권 등을 말함
2) 유가증권의 만료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주식 및 투자유가증권(출자금 포함) 등은 제외함.

(6)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1) 개요

개인,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인적사항과 소득 현황, 재무상태, 금융기관 거래정보, 신용도 등의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 및 적용금리 등을 결정해 신속하게 알려주는 자동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즉, 나이·직업·소득 등 신상정보와 기타 은행거래정보 등을 이용, 고객의 신용도를 컴퓨터로 자동 계산하여 돈을 빌려줄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빌려준다면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를 컴퓨터를 통해 판단하도록 한 툴이다.

2) 적용현황

현재 당행은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이나 고객의 대출 요청시 대출적격 여부와, 대출가능금액 등의 산정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이용신청자의 소득 현황, 재무상태, 금융기관 거래정보,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기타경영현황]

29. 자회사 경영실적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회사명	재무상황		손익상황		결 산 기준일
	총자산	자기자본(자본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해당사항없음				

30. 여·수신 금리현황 및 결정체계

(1) 여신금리

(2020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신용등급별[1] 현황			비 고
			최상위 등 급	최다 차주 해당등급	최하위 등 급	
개인대출	신용대출 (무보증,1년)	등급	10분위	6분위	1분위	
		적용금리	8.34	19.66	20.66	
	아파트담보대출 (1년)	등급				금리산정시 평점미반영
		적용금리		4.58		
	예금담보대출 (정기예금1년)	등급				평점조회 비대상
		적용금리		3.72		
기업대출[2]	기업일반대출 (1년)	등급				기업등급 미반영
		적용금리		6.48		
	당좌대출	등급	-	-	-	
		적용금리	-	-	-	

주) ① 개인신용평점 분위 : 10분위(상위 0~10%=상위10%) ~ 1분위(상위90~100%=하위10%)
② 정상등급을 대상으로 함
③ 무보증대출 기준

(2) 수신금리

(2020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기 간	최저금리[1]	최고금리[2]	비 고
보통예금	-	0.1	0.1	
저축예금	-	-		
정기적금	6개월	2.1		
	1년	2.5		
	2년	2.7		
	3년	2.7		
정기예금	3개월	1.2		
	6개월	1.4		
	1년	2.0		
	2년	2.0		
	3년	-		
근로자우대저축	3년	-		
	5년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		

주) ① 기본고시금리 기준
② 일반우대금리 기준

(3) 금리 결정체계

1) 수신

시장금리, 단기자금시장전망, 당행의 자금구조 및 운용상황, 타행금리수준, 수신취급비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금리결정.

2) 여신

수신금리에 일정 spread 가산(3%~8%)하고 수수료, 여신업무수행에 따르는 업무원가를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이사회에서 최종금리 결정.

31.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조 달		운 용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국 내 은 행	-	-	보통예치금	6
기타금융기관	-	-	기타예치금	31
기타금융기관	-	-	일반자금대출	192
기타금융기관	-	-	종합통장대출	15

소 계	-	-	소 계	244
중 앙 회	-	-	중앙회예치금	345
	-	-	지급준비예치금	114
합 계	-	-	합 계	703

주) 거래 금융기관-대부업체(뉴아리원대부,안전대부,태강대부,한빛자산관리대부)

32. 준법감시인 제도

1) 준법감시인의 개념

□ 준법감시(Compliance)란 일반적으로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장치로
금융회사에 있어서 준법감시기능(Compliance)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으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름

2) 역할

1)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기획·입안
2)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수립 및 변경
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시장
   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나. 필요시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조사 및 감사위원회 앞 보고와 제재요구
   다.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4)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5)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준법심사
   가. 정관·내규의 제정 및 개정
   나.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다. 국내외 출자에 관한 사항
   라.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마.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감사위원회 소관업무와 회계 및 재무관련 보고서는 제외)
   바. 기타 이사회, 이사회소속위원회(감사위원회제외) 부의사항
6)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 실시
7) 임직원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마련
8)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가. 감독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의사소통체널 구축
   나.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위원회와의 협조·조언 등
10)준법감시활동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앞 보고
11)기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3) 운영현황

준법감시인 1명

33. 내부통제

1) 감사의 기능과 역할

(1) 감사의 직무 :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②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③ 내부감사부서장(준법감시인)의 임면에 대한 동의
④ 외부감사인 선임의 제청
⑤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⑥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⑦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⑧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감사의 방법

감사 및 감사인은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일상감사 :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반대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감사 :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내부감사부서 검사방향

①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② 사업부서별 영업계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③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④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⑤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⑥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⑦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⑧ 조직구조상 내부견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3) 검사빈도

① 일상감사 : 수시
② 정기감사 : 연1회 실시
③ 특별감사 : 분기1회

4) 감사조직(인원, 겸직 등) 및 활동내역

당행은 별도의 감사조직으로서 상근감사 부속조직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 감사의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사항을 일일 일상감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부서장에 해당하는 감사실장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상시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5)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세부운영기준 운영실적

- 해당사항없음

34.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사항

- 해당사항없음

34-1. 민원발생 건수<신설 2016. 8.22.>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 질의성,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건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대상기간
- 금 분기 : 2020년 4분기(2020.10.01.~2020.12.31)

가. 민원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3] (고객 만명당 건)			비고
	2020년 3분기 (전분기)	2020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2020년 3분기 (전분기)	2020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자체민원[1]	-	-	-	-	-	-	
대외민원[2]	1	5	400	0.68	3.44	400	
합 계	1	5	400	0.68	3.44	400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주2)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기관(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 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3) 환산 건수 = (전체 민원 건수 / 전체 고객 수)×10,000

나. 유형별 민원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고객 만명당 건)			비고
		2020년 3분기 (전분기)	2020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2020년 3분기 (전분기)	2020년 4분기 (금분기)	증감률 (%)	
유형	수 신	-	1	100	-	0.006	100	
	여 신	-	-	-	-	-		
	채권추심	1	2	100	0.68	1.38	100	
	기 타		2	200		1.38	200	
합 계		1	5	400	0.68	0	400	

35. 수시공시 사항

- 직전 사업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30%이상 변경사실 (20191231,20200331,20200630)
- 주주총회개최 관련사항 (20200324,20200720)
- 임원사임공시(20200331)

36. 직원대출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직원대출 잔액	-	-

37.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가. 신용공여[1]현황

* 직전분기대비

제49기4분기말(금분기):2020년12월말
제49기3분기말(직전분기):2020년09월말
(단위 : 백만원, %)

주주(또는 임원)명[2]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3]	선임당시 신용공여 (A)	제48기3분기말 (직전분기) 신용공여(B)	제48기4분기말 (금분기) 신용공여(C)	증 감(증감율)	
						선임일 대비(C-A)	전년동기 대비(C-B)
주주	( )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소 계				( )	( )
	( )	본 인				( )	( )
		특수관계인		해당사항없음		( )	( )
		소 계				( )	( )
	합 계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소 계				( )	( )
임원	( )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소 계				( )	( )
	( )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소 계				( )	( )
	합 계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소 계				( )	( )
총 계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계				( )	( )

주)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함
② 주주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대상으로 함. 임원의 경우에는 ( )에 선임년월과 직위(저축은행장, 사외이사 등)를 명시함. 신용공여가 없는 주주 및 임원의 경우에는 신용공여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함
③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주(또는 임원)의 특수관계인임

나. 기타 주요 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 현황[1)]

제49기4분기말 : 202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주주(또는 임원)명[2)]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3)]		거래구분 (매수/매도)	계약일자	거래액	비 고
주주		본 인					
		특수관계인					
		소 계					
		본 인					
		특수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원		본 인					
		특수관계인					
		소 계					
		본 인					
		특수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주) ① 당해 회계연도중(2020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함

②, 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2) 부동산 임대차 현황[1)]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주주(또는 임원)명[2)]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3)]		거래구분 (임대/임차)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임대차 거래액		비고
							보증금	연 간 임대(임차)료	
주주		본 인							
		특수관계인							
		소 계							
		본 인							
		특수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원		본 인							
		특수관계인							
		소 계							
		본 인							
		특수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주) ①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과 이행중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작성함

②, 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3)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등 현황[1)]

제49기4분기말 : 2020년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주주(또는 임원)명[2)]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3)]	거래내용[4)]	거래일자	물품공급(또는 용역계약)액	비 고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원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주) ① 당해 회계연도중(2020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②,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④ ○○물품공급, ○○용역계약 등으로 표시함

(4) 주식거래 현황[1)]

제49기4분기말:2020년12월말 현재 말
제48기말(전기):2019년12월말
(단위 : 백만원, 천주)

주주(또는 임원)명[2)]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명[3)]	제47기말 (전기)		매 수		매 도		제48기 4분기말현재		비고
			B/S상 잔액	보유량	거래 금액	거래 수량	거래금 액	거래수 량	B/S상 잔액	보유량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주		본 인									
		특수 관계인		해당사항없음							
		소 계									
임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원		본 인									
		특수 관계인									
		소 계									
총 계		본 인									
		특수관계인									
		계									

주) ① 당해 회계연도중(2020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한 거래(장기투자목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거래를 제외함)를 대상으로 작성함

②, ③ 양식 '가'의 해당 각주와 동일

38.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단위 : 백만원)

주구분[1]	대주주명	발행회사		전분기말 보유현황				취득내역						처분내역							분기말 보유현황			
		회사명	대주주와의관계	주식수	지분율	취득금액(A)	시가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취득목적	취득방법[2]	1주당취득가액	취득금액(B)	처분일자	처분주식수(C)	처분방법[2]	1주당처분가액(D)	1주당취득금액(E)	1주당장부가액(F)	처분손익{C*(D-F)}	주식수	지분율	취득금액(A+B-C*E)	시가
		소계						해당사항없음																
		소계																						
	합계																							
		소계																						
		소계																						
	합계																							
총계																								

주1)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여부를 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을 구분기재

* 참고조문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의3

3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현황

(단위 : 주, 원)

부여 받은자	관계	부여일	부여 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수량	행사 기간	행사 가격	종가
					부여	행사	취소				
				해당사항없음							
합 계	-	-	-	-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1) 행사가격

(2) 행사수량

(3) 기 타

다. 연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및 취소

(1) 부여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일	직위	성명	주식의 종류	기부여 주식수	부여 주식수	행사 기간	행사 가격	행사 조건	부여시 현재가치	발행 주식 총수	주총 부여 한도
				해당사항없음							

(나) 이사회 결의

부여일	직위	성명	주식의 종류	기부여 주식수	부여 주식수	행사 기간	행사 가격	행사 조건	부여시 현재 가치	발행주식 총수	이사회 결의 부여한도
				해당사항없음							

(2) 행사

행사일	직위	성명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잔여 주식수	부여시 행사가격	최종 행사가격	행사시 주가	행사 이익
				해당사항없음						

(3) 취소

취소일	직위	성명	주식의종류	부여주식수	취소주식수	잔여주식수	취소사유
			해당사항없음				

40. 상품이용시 유의사항

1) 상호저축은행거래는 실명에 의해야 합니다.
2)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우리 상호저축은행의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3) 대출의 이용은 채무자 본인의 수입 등으로부터 무리없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4) 담보부 여신의 이용시에는 담보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뱅킹 이용고객께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인터넷뱅킹 이용시 유의하여 주십시오.
6) 당행 임직원은 유·무선상 고객님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수수료

여·수신 수입 수수료

1) 수신업무수수료

구 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 제 대 상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당사양식 건당 1,000 원	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면 제	
다. 현금카드,통장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통장재발급 1,000원 카드1매당 1,000원	
라 인감변경시	통장당	1,000원	

2) 여 신 부 문 수 수 료

구 분	대 상 항 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 제 대 상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증 명 서 발 급 시	본인확인용 - 1,000원 법원제출용 - 5,000원 은행조회서 - 10,000원	주1) 참조
2. 담보변경	-담보해지·교체 조건변경신청서	조건변경 실 행 일	등기실비	
3. 담보조사	-담보물추정시가 조사	대 출 금 취 급 일	면 제	
4. 신용조사	-신규조사 및 정기조사	대출실행시	-	
5. 수금비용	- 일수대출	수 금 시	면 제	
6.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금 기한전 상환시	기 한 전 상 환 시	담보대출(1년이내 1.0%~2%) 신용대출(1년이내 1.0%~2%)	

주1) 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⑵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금융거래 확인에 따른 제 증명서 발급시

3) 타행환수수료

구 분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당행	면 제		
			타행	500원	1,000원	2,000원
CD 업무 수수료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행	해당사항없음		
			타행	해당사항없음		
		영업시간 이후	당지	해당사항없음		
			타지	해당사항없음		
CMS 업무수수료			면 제			

4) 계좌이체수수료

(단위 :원)

기준금액	저축은행간 이체		CD공동망 이체	
	당지수수료	타지수수료	당지수수료	타지수수료
100,000이하	0	700	800	800
500,000이하	0	900	1,000	1,000
1,000,000이하	0	900	1,000	1,000
3,000,000이하	0	900	1,000	1,000
5,000,000이하	0	900	1,000	1,000
7,000,000이하	0	900	1,000	1,000
10,000,000이상	0	900	1,000	1,000

5) 추심수수료

구 분	당 지	타 지
500만원이하	無	無
1,000만원이하	無	無
1,000만원초과	無	無

*** 담보대출관련 수수료 세부내역(LTV 기준)**

대 상	취급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율	기타
일반담보대출	무	2%이내	계산식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잔여만기일수/365
아파트 담보대출		2%이내	

*상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감액 및 면제할 수 있다.

42. 주요용어해설

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금융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 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5%입니다.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⑵ 업무이익(충당금적립전이익)

업무이익(충당금적립전이익)은 총수익에서 제경비 등을 차감한 이익으로서 저축은행의 영업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업무이익(충당금적립전이익)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제충당금환입액 + 제충당금전입액(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 기타충당금전입액)

⑶ 유동성 비율

단기조달자금에 대한 단기자금운용을 표시(상호저축은행의 지급능력)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유동성부채) × 100

* 유동성자산 : 현금, 만기가 3개월이내에 도래하는 예치금, 정상분류 대출채권중에서 3개월이내 만기도래액(콜론 포함),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유가증권[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유가증권·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은 시가평가후 포함)의 합계액. 단, 요주의 이하 분류대상 자산은 제외
* 유동성부채 : 잔존만기 3개월이내의 예수금,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차입금(경영정상화장기차입금 제외), 잔존만기 3개월이내의 사채, 콜머니, 만기없는 예수금 직전 1년간 평잔의 30%의 합계액

⑷ 유형자산 비율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액과 자기자본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43. 감사보고서
44. 재무상태표
45. 손익계산서
46. 자본변동표
4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8. 현금흐름표
49. 주석사항
*43~49는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로 대체합니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

제　　정 : 1998.12. 26
1차 개정 : 1999. 1.20
2차 개정 : 2000.10. 26
3차 개정 : 2002. 7. 12
4차 개정 : 2004. 2. 23
5차 개정 : 2007. 6. 25
6차 개정 : 2008. 8. 13
7차 개정 : 2010.11. 5
8차 개정 : 2012. 2. 6
9차 개정 : 2013. 1. 9
10차 개정 : 2014. 1. 27
11차 개정 : 2015. 7. 1
12차 개정 : 2016. 8. 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2. 2007.6.25>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2.7.12, 2008.8.13.>

제3조(일반원칙) 저축은행은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8.8.13.>

1.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8.13>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8.13>
3. 공시자료는 저축은행의 경쟁적 지위를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7.12, 2008.8.13.>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신설 2008.8.13>

제4조(근거표시 등) ①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공시자료는 표지안쪽에「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7.6.25, 2008.8.13>

②공시자료에는 인사말 등을 통하여 공시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경영진의 서명이 첨부된 선언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2.7.12., 2008.8.13>

③제1항에 의한 근거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이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3>

제5조(공시대상) ①저축은행의 공시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2, 2004.2.23. 2008.8.13, 2012.2.6>

1. 결산 및 분기별 결산공시 대상은 <별표1>의 "통일공시 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8.13, 개정 2012.2.6>
2. 삭제 <2012.2.6>
3. 수시공시 대상은 <별표3>의 "수시공시 항목 및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8.13>

②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영공시 대상을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5, 개정 2008.8.13>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경영진에 의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2.7.12. 2008.8.13>

④ 삭제 <2008.8.13>

제6조(공시방법 등) ①공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점공시와 전자공시로 구분한다. <개정 2007.6.25, 2008.8.13>

1. 영업점공시는 당해 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 객장의 지정장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8.13>
2. 전자공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8.13>

②영업점 공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공시자료의 객장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7.12, 2004.2.23. 2007.6.25, 2008.8.13>

③전자공시는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를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3>

④저축은행은 제5조의 공시자료를 소비자 단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배포대상은 각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02.7.12, 2004.2.23, 2008.8.13>

⑤저축은행은 일반인 등으로부터 경영공시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7.12, 2004.2.23, 2008.8.13>

(본조제목변경 2008.8.13)

제7조(공시절차 및 기간) ①저축은행은 제5조의 공시대상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영업점공시 및 전자공시(제8조에 따른 중앙회 요약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7>

1.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2. 분기별 결산공시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개정 2012.2.6>
3. 수시공시는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②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영업점공시 및 전자공시를 하여야 한다

1.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년 이상
2. 분기별 결산공시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시자료 배포후 까지 <개정 2012.2.6>
3.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③저축은행은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8.8.13>]

제8조(요약공시) ①저축은행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결산공시·분기별 결산공시와는 별도로 <별표4>의 "요약경영공시"를 작성하여 이를 저축은행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각각 전자공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1.27>

②저축은행은 결산에 대한 요약경영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분기별 결산에 대한 요약공시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6>

③저축은행은 결산 및 분기별 결산에 대한 요약공시를 다음 요약공시시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6>

④저축은행은 공시(수정공시를 포함한다)시 해당 저축은행 공시와 중앙회 홈페이지 전자공시 내용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7>

[전문개정 2008.8.13] (본조제목변경 2008.8.13) [제7조에서 이동 <2008.8.13>]

제8조의2(감사보고서 게시) 저축은행은 결산공시시 감사보고서(결산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절차 및 기간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7>

제9조(공시내용수정) ①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공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8.8.13>

②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제6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점공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3>

③저축은행은 공시내용 수정시 수정전 공시내용도 함께 게시(영업점공시, 전자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7>

[제8조에서 이동 <2008.8.13>]

제10조(실무작업반) 중앙회 회장은 이 기준의 변경 및 기타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제도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08.8.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 12.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교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작성기준과 서식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반기 가결산 결과 및 결산결과에 의한 경영공시는 당해연도분만을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9. 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2002.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10.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 7.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 2.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 6.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13>

제1조(시행일) ①이 기준은 2008.9.16부터 시행한다.
②2008년 결산공시는 이 기준에 의한다.

부 칙<2010.11.5>

제1조(시행일) ①이 기준은 2010.1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6>

제1조(시행일) ①이 기준은 2012.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9>

제1조(시행일) ①이 기준은 2013.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2.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8.22.부터 시행한다.